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4. 3. 1.~3. 31.까지)

- 외국인인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해외유입)에 한하여 적용
 - (변경사항) 덴마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미지원 국가로 변경

* 붉은색 추가, 변경된 국가

전액지원 국가(42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범위에서 전액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베네수엘라, 베냉,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캐나다, 쿠웨이트,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37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니제르, 대만,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디브, 민주콩고, 루마니아, 바레인, 벨기에, 벨라루스,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이셸, 스리랑카, 슬로베니아,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자메이카, 지부티,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페루, 프랑스, 필리핀

미지원 국가(98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과테말라,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오스, 르완다,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솔로몬제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안도라,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예멘,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쿡제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공화국, 핀란드, 헝가리, 홍콩